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
3. 정정사유:

- 클래스 추가(Ae, C-F, C-W, C-P, C-Pe, C-P2, S-P)
- S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(0.35% => 0.30%)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 - Class S (클래스 신설)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 - Class S - Class Ae - Class C-F - Class C-W - Class C-P - Class C-Pe - Class C-P2 - Class S-P
제 2 부.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	투자신탁의 명칭 (종류) :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(주식)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

		- Class S - (클래스 신설)	- Class S - Class Ae - Class C-F - Class C-W - Class C-P - Class C-Pe - Class C-P2 - Class S-P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클래스 추가	나. 종류형 구조 클래스별 가입자격,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 - Class S - (클래스 신설)	나. 종류형 구조 클래스별 가입자격,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- Class A - Class C - Class C1 - Class C2 - Class E - Class S - Class Ae - Class C-F - Class C-W - Class C-P - Class C-Pe - Class C-P2 - Class S-P
제 2 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클래스 추가	2) 종류별 가입자격 기존클래스 (생략)	2)종류별 가입자격 기존 클래스 (현행과 같음) 신규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- Class Ae 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- Class C-F: 집합투자기구/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/ 최초 납입액이 10 억원 이상인 법인 혹은 최초 납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개인

			Class Ae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5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C-F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C-W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0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C-P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80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C-Pe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40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C-P2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
--	--	--	--

			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60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Class S-P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0.735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400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00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40% *1,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: 클래스 추가 (Ae, C-F, C-W, C-P, C-Pe, C-P2, S-P)
제 2 부.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연금클래스 추가에 따른 과세 관련 내용 추가	나. 과세 1) ~ 3) 생략	나. 과세 1) ~ 3) 현행과 같음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표 5)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

			바랍니다.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,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(2015.1.1.이후 납입분)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: 연금 수령,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. 따라서 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 2 부 별첨 1.3.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기준)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	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1.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	요약재무내용 FY2016 기준 업데이트
제 4 부.1. 라. 운용자산규모	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		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